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. 2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1월 17일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8년 1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8년 1월 26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유상한

가. 제안이유

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에 의한 정원을 정비하고, 구의회사무국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('17.12.31.)에 따라, 정원의 총수를 1,413명에서 1,412명으로 조정(안 제2조, 별표 3)
 - 본청 일반직 5급 정원 1명 감
(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)
-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비율 조정 및 구의회 5급 정원 조정(안 별표 2, 3)
 - 별정직 직급별 비율 조정
 - 5급상당 이상 50% 이내, 6급상당 25% 이내, 7급상당 25% 이상
 - 구의회 별정직 5급 상당 1명 감 ⇒ 일반직 5급 1명 증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한시기구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이 만료('17.12.31.)됨에 따라 일반직 5급 정원을 1명 감하여 정원의 총수를 1,413명에서 1,412명으로 조정하고,

○ 별정직 직급별 비율을 5급 상당은 당초 60%에서 50%로 줄여 전문위원 직급을 당초 별정직 5급 상당 2명에서 별정직 5급 상당 1명, 일반직 5급 1명으로 조정하며,

○ 별정직 6급 상당은 당초 0%에서 25%로, 별정직 7급 상당은 당초 40%에서 25%까지 조정하여 의장비서 직급을 별정직 7급 상당에서 별정직 6급 상당으로 하려는 것임.

○ 이는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근거하여 구의회사무국의 전문성 제고 및 집행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